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고 제2025-2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를 제정(윤구영 의원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안 제5조 및 제6조)
- 사업의 위탁(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 (참조: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전화 032-509-7028 / 팩스 032-509-76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붙임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부평구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65세 이상 독거노인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5. 그 밖에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지원대상자의 친족
4. 지원대상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단,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신청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통보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가스타이머 쿡 보급 지원 신청서 (제5조 관련)				
대상자	성명 (시설명)		가스구분	☐ 도시가스 ☐ LPG금속배관
	생년월일 (설립연도)		성별	☐ 남 ☐ 여
	주소			
	연락처			
지원대상 세대유형		☐ 치매환자 ☐ 장애인 ☐ 65세이상 독거노인 ☐ 경로당 ☐ 기타()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스타이머 쿡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쿡 보급 지원을 신청하며, 사무의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사본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스타이머 쿡 보급 지원 관련 본인확인 ○ 가스타이머 쿡 보급 지원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지원대상 자격판정 자료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기타 지원대상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해당연도로부터 3년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스타이머 쿡 보급 지원사업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관련법령 발췌사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